

【 5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제의년월일 : 1995. 12. 7.

제 의 자 : 의 장

□ 주 문

'96년도 예산안 및 '94년도 세입세출결산서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양주군의회위원회조례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구성할 것을 결의함.

□ 제안이유

양주군수가 제출한 1996년도 예산안 및 1994년도 세입세출결산서 심사를 위하여 양주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예결특위를 이홍규, 이상원, 박영원, 홍재룡, 유재원, 김광배, 김영안의원 등 7인으로 구성 운영하려는 것임.

【 6 】 1996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년월일 : 1995. 12. 20.

제 안 자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수정이유

1996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한 결과 예산이 합리적, 합목적적으로 쓰여질 수 있도록 별첨 수정내역과 같이 수정안을 예결특위안으로 의결코자 제출하는 것임.

□ 주요골자

가. 일반회계 세출예산증

일반행정비는 28,276,212천원을 29,009,757천원으로

사회개발비는 27,439,161천원을 26,585,613천원으로

경제개발비는 21,886,081천원을 21,943,752천원으로

민방위비는 358,965천원을 제출안대로

지원및기타경비는 947,603천원을 929,612천원으로 조정하여

나. 일반회계 삭감액중 증액부분을 제외한 32,720천원은 세입부분의 임시적 세외수입중 부담금을 감액하여 계수를 조정 하였으며

다. 세출부분의 읍면분과 특별회계 세입·세출부분은 조정없이 원안대로 함.

【 7 】 1995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제출년월일 : 1995. 12. 19.

제 출 자 : 양 주 군 수

□ 제안이유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 및 성립전 집행예산등 사업마무리를 위한 계수조정과 '95회계년도내 지출하지 못할것으로 예상되는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의회의결을 얻고자 '95. 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 제출함.

□ 주요골자

1. 추경예산안 내용

○ 예산규모 : 86,314백만원(1,141백만원, 1.3%증)

- 일반회계 : 74,540백만원 (174백만원, 0.2%증)

- 특별회계 : 11,774백만원 (967백만원, 8.2%증)